격려금 지급규정

제정 2016. 4. 1 경상북도 승인 2016. 4.27

제1조(목적) 각종 국제 및 국내대회 개최 및 참가하는 선수단의 성적거양과 유관단체의 격려를 통해 본도 체육진흥을 도모코자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1. 우리 도 출신 또는 등록된 선수나 팀

- 2. 각종 대회 개최 시 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운영본부 및 유관단체 임·직원
- 3. 본회 산하 각종 단체 및 협의회 등

제3조(지급구분) 지급구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를 포함하는 각종 국제대회
- 2. 대통령기 및 전국대회
- 3. 전국체전 등 각종 종합체육대회
- 4. 기타 각종 체육 행사 및 협의회 행사

제4조(격려금 지급기준) 격려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격려금 지급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지 급	급 기	준	금 액	비고
각종국내 · 외대회 참가 · 입상격려금	지도자·선수		동·하계 국제다 (올림픽, 아시안			300,000	개인별 지급
	참가팀		국제대회 출전(기]타 선~	수권대회 등)	300,000	단일팀 참가경우
			전국규모 국내다	회 출	전(년1회)	300,000	팀 별 지급
	지도자 · 선수		국제대회 입상		금메달	1,000,000	
			(올림픽)	은메달	700,000		
					동메달	300,000	
			국제대회 입상 (아시안게임, U대회)		금메달	500,000	
					은메달	300,000	
					동메달	200,000	
			기타 세계대회 입상 (선수권대회 등)	금메달		한함	
				은메달	200,000		
					동메달		100,000
전국(소년)체전 훈련장 순방격려 및 대회 현지 격려금	초·중·고·대· 일 반 부 (전종별)		개인경기		10명 이하	300,000	4
			11~20명	400,000			
			21~30명	600,000			
				31~40명	900,000	※ 종목당 1회 지급	
				41~70명	1,400,000	_ ^ ы	
					2,200,000	-	
				100명 이상	2,500,000	-	
		단체경기	[フ]	10명 이하	200,000	※ 예선, 준결승,	
		_ , , ,		11~20명	300,000	결승 진출시	
					21~30명	400,000	
			※ 개인경기5인 이하는 1인 30,000원에 해당하는 격려금을 지급한다.※ 인원대비 기준이 현저히 미달되는 격려금 지원 요인이 있을 시, 해당 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가 격려할 수 있다.				
동계체전 훈련장 순방 격려 및 현지격려금	초·중·고· 대· 일 반 부		개인·단체경	[기	20명 이하	300,000	・개인종목 1회
				20~30명	400,000	· 단체종목 (예선,준결승, 결승) 진출시 팀별지급 ※ 초등은 정식 종목 채택 후 지급	
				30명 이상	500,000		
			⊙ 100명 이상			1,000,000	w ===1=1=11
각종 체육행사 격려금 (대회 운영단체, 유관기관 등)			O 50~99명			500,000~ 800,000	- ※ 경기난제 (시구체육회)
(비숙 보증단계, 1	1 C 1 C 0 /		⊙ 50명 미만			100,000~ 400,000	1,000,000

[※] 격려금의 지급기준액은 격려금 예산범위, 경기진행 상황 등에 따라 증감 지급 할 수 있음.